

제167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

심의일자 : 2023. 8. 10.

□ 안건명 : 잠수교 전면 보행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

위 안건에 대한 제167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,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붙임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「조건부채택」 의결함.

【주요 심의내용】

○ 환경영향조사 부분

- 환경영향 부분 중 인근 주거지역 및 주상복합건물과의 소음영향 위주로 작성되어 있음. 반포대교 및 잠수교가 한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수 등 수경시설 도입, 목적시설물 이용객 또한 주변 한강공원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한강의 수질오염 방지 등 해당사업과 밀접한 환경영향 부분으로 작성되어야 함.

○ 2.2.11. 기타조사에 추가 반영 필요

- 5. 기존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고서(내진설계, 정밀점검, 정밀안전진단 등)를 검토하여 손상현황 및 내구성 등을 파악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.

○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한강상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시행되므로 하천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검토 필요

- 하천법령, 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(국토교통부), 하천설계 기준해설(한국수자원학회) 추가 필요

붙임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. 끝.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제167차 잠수교 전면 보행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토 목 구 조	1. 과업의 범위 및 규모 (1) “1.3.2 과업의 범위 및 규모” 부분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된 부분이 공모 지침서의 필수 제안범위와 차이가 있으므로 검토 필요함. - 과업내용서 잠수교 보행교 전환 (연장 795m, 폭원 18m) 잠수교 주변 접근로 및 연계공간, 수상공간 등 - 공모지침서의 필수 제안범위 반포대교 남단 및 북단의 연결교량의 상당부분을 포함함	1쪽
	(2)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위치도와 공모지침서의 위치도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과업내용서에 공모지침서의 제안 위치도를 추가하는 것 검토 필요함.	26쪽
	2. “제6절 보행교 계획 및 구조물 설계” 부분 지형도 축척 수정 필요 : 서울시(지방자치단체의 도심지 관리 지형도)의 수치지형도의 기본 축척은 1:1,000이며, 아래 1/25,000 ~50,000 등은 고속도로 등과 같이 광역범위를 대상으로 개략 검토하는 수준이므로 본 과업에 적합하지 않음. (1) 3.6.1 보행교 계획	19쪽 20쪽
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 1. 1/25,000~1/50,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후보 선형(노선)을 설정하고, 선형 별로 검토한 후 최적 선형을 결정한다.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 2. 1/5,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개략선형을 선정하고, 기존 도로 및 한강 둔치 등과의 접속을 검토한다. </div> (2) 3.6.2 선형(중·평면) 설계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 1. 축척 1/25,000~1/50,000 지형도상에서 후보 선형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고 최적(안)을 결정한다.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 2. 최적(안)에 대하여 축척 1/5,000 지형도상에서 개략적인 선형(노선) 설계를 계획하고, </div> (3) 3.6.4 개략설계도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2. 개략설계는 1/1000~1/5,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중·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, ~ 생략~ </div>	

	<p>3. 환경영향조사 부분</p> <p>(1) 환경영향 부분 중 인근 주거지역 및 주상복합건물과의 소음 영향 위주로 작성되어 있음. 반포대교 및 잠수교가 한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수 등 수경시설 도입, 목적시설물 이용객 또한 주변 한강공원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한강의 수질오염 방지 등 해당사업과 밀접한 환경영향부분으로 작성되어야 함.</p>	<p>15쪽 18쪽</p>
	<p>4. 주민의견 수렴 부분</p> <p>(1) 주민의견 수렴 부분이 본 사업과 크게 관련없는 내용 위주로 작성되었으므로 검토 후 수정 필요함.</p> <p>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대체도로 건설에 대해 “발주기관” 이 요구할 경우 필요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필요한 홍보자료, 도면, 팸플렛 등을 “발주기관” 의 요구에 따라 작성·제출한다.</p>	<p>14쪽</p>
	<p>5. 목차</p> <p>(1) 과업내용서의 본문 내용에 부합하도록 목차 일부 수정 필요</p> <p>제6절 교차로 운영계획 및 구조물 설계19</p>	<p>목차</p>
	<p>6. 최종 성과품</p> <p>(1) “4.4.1 최종 성과품” 의 종류 중 조감도는 A3×5매로 제시되어 있음. A3로 작성된 1 컷을 5부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인지 A3로 5컷을 작성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.</p>	<p>25쪽</p>
<p>종합의견</p>	<p>조건부채택</p>	

2023년 8월 9일

심의위원 :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제167차 잠수교 전면 보행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토목구조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.6.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추가반영 4. 현재 구조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추후 인수받아 관리하여야 하는 유관부서(교량안전과 등)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후 공사 완료 후에도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설계, 시공이 되어야 한다. 2. 2.2.11 기타 조사에 추가반영 5. 기존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고서(내진설계, 정밀점검, 정밀안전진단 등)를 검토하여 손상현황 및 내구성 등을 파악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. 3. 3.3.3 기타사항에 추가 4. 본 대상지역의 교통차단시 우회하는 교통량에 대한 예측 및 대책에 대한 방안을 수립한다. 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23년 8월 9일

심의위원 :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제167차 잠수교 전면 보행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

분야	검 토 의 견	비 고
토목시공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잠수교의 시,종점부(강남·북부)에서 기존 차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체 교통우회로 및 새로운 이동경로에 대한 선별적 설문을 통해 최적의 교통량 분산으로 차량통제에 따른 교통서비스 등급 저하 방지 필요2. 기상이변으로 인한 한강수위 급상승 시 출입 통제 방안 및 위급 상황 시 교량 상 대피공간 확보방안 검토 필요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23년 8월 9일

심의위원 :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제167차 잠수교 전면 보행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수자원	<p>1. (P.9) 1.5.2 적용기준 및 시방서 추가 (추가) 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 - 국토교통부 (추가) 하천설계기준해설 - 한국수자원학회</p> <p>2. (P.11) 1.5.3 관련법령 및 기준 추가 (추가) 하천법령</p> <p>3. (P.16) 2.2.8 배수시설 조사 추가 6. 한강 하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상 보행교 설치 지점의 유량, 수위, 유속 등 수리·수문량 및 장래하상변동을 조사한다.</p> <p>4. (P.20) 3.6.3 구조물 설계 수정 4. 한강 하천기본계획 상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교량의 적정 형하고, 경간장, 하상보호공 등을 구조물 설계에 반영한다.</p>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23년 8월 9일

심의위원 :

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제167차 잠수교 전면 보행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종 합	<p>1. 제1장 총칙, 제3절 과업의 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사전환경성 검토(전략환경영향평가 여부 검토)를 환경성검토(전략환경영향평가 여부)로 수정 필요 - 유지관리 보고서 검토(정밀안전진단 등) 추가 <p>2. 제1장 총칙, 제4절 일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)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(별지25호 서식) →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(별지 27호 및 28호 서식) <p>3. 제2장 조사업무, 2.1.2 주민의견 수렴(필요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대체도로 건설은 본 과업과 관련 없으므로 수정하기 바람 <p>4. 제3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제3절 교통영향(보행통행 포함) 및 평가 과업 범위 수정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업단계상 교통영향평가는 대상이 아니므로 교통수요예측(보행통행 포함) 및 영향분석으로 수정 필요 <p>5. 1.4.5 심의 및 자문 내용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시설물 디자인 품질관리 개선방안(기술심사담당관-9029(2023.5.16.)호)에 따라 디자인 분야 전문가가 설계에 참여하여 디자인 품질향상 방향과 관련 내용이 설계에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<p>6.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한강상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시행되므로 하천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검토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천법령, 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(국토교통부), 하천설계 기준해설(한국수자원학회) 추가 필요 <p>7. 제3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확인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.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 형태 기술공모~ 공사수행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본 용역의 과업범위에 해당하는지 재검토 필요 	

	<p>8.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관련 기준 등 수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과품 작성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조례 시행규칙(별표1)은 관련이 없으므로 수정하기 바람 - 4.3.2. 기타에서 해당 용역은 기술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수정 필요 - 4.4.2 usb 작성기준에 보고서 :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은 상단에 제시한 전산파일명과 상이하므로 수정 필요 <p>9. 관련 기준 현행화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, '22.12.23.) →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, '23.6.29.) -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→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) - 도로교 설계기준(국토해양부) → 도로교 설계기준(국토교통부) 	
<p>종합의견</p>	<p>조건부채택</p>	

2023년 8월 9일

심의위원 :